

1. 개정이유

구급차등의 운행에 대한 관리·감독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출동 및 처치기록과 운행기록대장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운행기록대장을 조작·위조·변조하여 보관하지 않도록 하며, 구급차 운영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구급차 운행기록을 실시간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구급차의 운행기록 및 영상기록을 조작·위조·변조하여 보관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효율적인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구급차등에서 의료기관으로 응급환자를 인수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의사·간호사 등으로 확대하고,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 신청 또는 지위승계 신고 서류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며, 응급환자이송업자가 응급환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송처치료를 인상하고, 구급차에 구비해야 하는 의약품에 에피네프린 자동주입펜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응급환자 인수자의 범위 확대(안 제40조제2항)

응급구조사 등이 구급차등에서 의료기관으로 응급환자를 인계할 때 의사가 인수하던 것을 간호사나 응급구조사도 인수할 수 있도록 응급환자 인수자의 범위를 의사에서 응급의료종사자로 확대함.

나. 구급차등의 출동·처치기록과 운행기록대장의 관리(안 제40조제4항)

· 제5항 및 별표 18 제2호허목)

- 1)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출동사항,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결과, 응급 처치 내용 등의 출동 및 처치기록을 응급의료센터에 보낼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안상의 이유로 전자문서로 작성·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문서로 작성·제출하도록 함.
- 2)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구급차등 운행기록대장을 보관할 때 조작 또는 위조·변조한 것으로 보관해서는 안 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운행기록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도록 하며, 운행기록대장을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보존하도록 함.

다. 구급차 운행기록 및 영상기록의 관리(안 별표 16의2 제2호가목 및 별표 18 제2호처목)

- 1) 구급차의 운용자는 구급차 운행기록 및 영상기록을 조작 또는 위조·변조한 것으로 보관하면 안 되도록 하고, 위반 시 보관의무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도록 함.
- 2) 구급차 운용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구급차 운행기록을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구급차 운행기록 및 영상기록의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의 진술 청취 및 운행기록장치·영상기록장치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라. 응급환자이송업 허가 신청 서류 등(안 제41조제1항, 안 제41조제8항 신설, 안 별표 18 제2호모목 및 별지 제17호서식)

1) 응급환자이송업 허가를 신청할 때, 종전에 제출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내역을 기재한 서류’ 대신에 허가기준의 해당 여부 확인에 필요한 ‘자본금을 증명하는 서류’ 및 ‘구급차 보유와 인력 채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함.

2)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구급차등의 운용자로서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의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경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응급환자이송업의 지위승계 신고 서류 간소화(안 제44조제1항 및 별지 제23호서식)

응급환자이송업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시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본인 및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제시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바. 구급차등의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현실화 등(안 별표 3 및 별표 16)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받아 구급차등을 운영하여 응급환자를 이송한 경우 환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응급환자 이송처치료의 기본요금 등을 인상하고, 야간할증 적용시간대를 확대하며, 토요일·공휴일 할증요금을 적용하고, 병원 도착 후 30분이 지나면 대기요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구급차의 필수 구비 의약품에 에피네프린 자동주입펜을 추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2. 6. ~ 3. 1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합리화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 1건(응급환자 대응능력 제고)

- 규제 강화 2건(구급차 운행 적절성 확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전단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36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항제1호”를 “제4항제1호”로 한다.

제40조제2항 중 “인수한 의사의 서명을 얻은 뒤”를 “인수한 응급의료종사자의 서명을 받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응급의료지원센터로”를 “기록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응급의료지원센터에”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특별히 보안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전자문서로 작성·제출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40조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조작 또는 위조·변조한 것으로 운행기록대장을 보존해서는 안 된다.

제40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5항의 구급차등 운행기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처리가 가

능한 방법으로 작성·보존해야 한다.

제41조의 제목 “(이송업의 허가절차)”를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절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7호서식의 응급환자이송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별지 제17호서식의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본금과 구급차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제41조제1항제6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정관 1부

제41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인력 채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41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9조의2에 따라 법 제51조제7항에 따른 응급환자이송업자의 시설 등의 기준 준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응급환자이송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응급환자이송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23호서식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별지 제23호서식의 영업자지위승계 신고서”로,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1부”를 “1부(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제시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6 제1호다목1)의 장비란에 아)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에피네프린을 투여할 자동주입펜

별표 16 제2호다목1)의 장비란에 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에피네프린을 투여할 자동주입펜

별표 16의2 제1호가목 중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제1항”을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29조의3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4)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 5)를 8)로 하고, 같은 목에 5)부터 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구급차의 운용자는 구급차 운행기록 및 영상기록을 조작 또는 위조·변조한 것으로 보관해서는 안 된다.

5) 구급차의 운용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구급차 운행기록을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또는 저장장치를 이용하여 구급차 운행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6) 구급차의 운용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구급차 영상기록의 제출

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또는 저장장치를 이용하여 구급차 영상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 7) 보건복지부장관은 5) 또는 6)에 따라 구급차의 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구급차 운행기록 또는 영상기록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급차의 운용자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의 진술을 듣거나 구급차 운행기록장치 및 영상기록장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별표 16의2 제2호다목5) 중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를 “영상정보 처리기기로”로 한다.

별표 18 제2호처목 중 “아니하거나”를 “않거나”로, “수집·보관하지 아니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를 “수집·보관 또는 제출하지 않거나 조작 또는 위조·변조한 것으로 보관한 경우”로 하고, 같은 호 허목 중 “법 제49조제4항”을 “법 제49조제2항·제4항”으로,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를 “작성하지 않거나 3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이거나 조작 또는 위조·변조한 것으로 운행기록대장을 보존한 경우”로 하며, 같은 목의 근거법령란의 “법 제55조제3항제1호”를 “법 제55조제3항제1호·제6호”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모목 중 “아니한 경우”를 “않거나, 시설 등의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앞쪽의 제1호의 환자인계의사*란 및 환자인수의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환자인계자*	종별	① 의사 ② 간호사 ③ 1급 응급구조사 ④ 2급 응급구조사 ⑤ 그 밖의 인계자()		
	면허번호		성명	(서명)

환자인수자*	종별	① 의사 ② 간호사 ③ 1급 응급구조사 ④ 2급 응급구조사 ⑤ 그 밖의 인수자()		
	면허번호		성명	(서명)

별지 제16호서식 앞쪽의 제5호의 운전자*의 종별(차량,자격,면허)*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중 “동승자*”를 “작성자*”로 하며, 같은 쪽의 비고의 제1호 중 “환자인계·인수의사”를 “환자인계·인수자”로 한다.

① 1급 응급구조사 ② 2급 응급구조사 ③ 간호사 ④ 의사 ⑤ 없음 ⑥ 그 밖의 자격·면허자()

별지 제16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의 제1호⑪ 중 “환자인계의사 및 환자인수의사”를 “환자인계자 및 환자인수자”로, “인수한 의사의 면허번호”를 “인수자의 종별, 면허번호(자격번호)”로 하고, 같은 호 ⑪ 중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쪽의 작성방법의 제5호② 중 “성명을”을 “성명, 자격·면허의 구분과 그 번호를”로 하고, 같은 호 ③ 중 “이송차 동승자”를 “출동 및 처치 기록지 작성자”로, “합니다”를 “합니다.”로 한다.

별지 제16호의2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별표 16 및 별지 제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16의2 제2호가목5)의 개정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법 제4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구급차의 운용자의 경우: 공포 후 1년 3개월이 경과한 날
2. 법 제4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구급차의 운용자의 경우(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구급차의 운용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제2조(응급구조사등의 출동 및 처치 기록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2항·제6항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구급차등이 환자의 이송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구급차등의 이송처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및 별지 제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구급차등이 이송을 시작하는 환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구급차의 에피네프린 자동주입펜 구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6 제1호다목1)아) 및 제2호다목1)라)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구급차가 환자의 이송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구급차등 운행기록대장 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16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구급차등이 환자의 이송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송처치료의 기준(제11조 관련)

구분	요금의 종류	구급차의 운전자	
		법 제44조제1항제1호 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의료기관 등	법 제44조제1항제5호에 따 른 비영리법인
일반 구급차	기본요금 (이송거리 10km 이내)	40,000원	26,600원
	추가요금 (이송거리 10km 초과)	1,500원/1km	1,000원/1km
특수 구급차	기본요금 (이송거리 10km 이내)	95,500원	63,600원
	추가요금 (이송거리 10km 초과)	2,300원/1km	1,500원/1km
공통	할증요금 (평일 18:00~ 다음날 09:00, 토요일, 공휴일)	기본 및 추가요금에 각각 20% 가산	
	대기요금 (병원 도착 후 30분 경과 시부터)	6,000원/10분	

- 비고: 1. “이송거리”는 환자가 구급차에 실제로 탑승한 거리임.
2.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름.
3. “대기요금”은 의료기관에 도착하여 환자를 인계하기 전까지 대기하는 시
간에 대하여 부과되는 요금으로 출동 및 처지 기록지의 “기관도착 연월
일”부터 “이송종료 연월일”까지의 시간을 토대로 산정하며, 병원 도착 후
30분 경과 후부터 10분 단위로 책정함.
4. 선박에 응급환자가 탑승한 구급차가 승선하여 이송하는 경우 해당 구간은
이송거리가 아닌 이송시간에 따라 10분마다 6,000원을 부과함. 다만, 도선
료, 숙박비 등은 실제 발생한 비용의 범위에서 별도 부과 가능함.
5. 응급환자가 선박 및 항공기에 탑승한 경우의 이송처치료의 기준은 보건복
지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함.

이송처치료 영수증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영수증번호		결제방법	[] 현금 [] 카드 [] 기타
구급차 운용 통보(신고)번호 또는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번호		운용기관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차량등록번호		운전자 성명	
차량 주행 거리	Km	구급차탑승시간	YYYY-MM-DD HH:MM
		기관도착시간	YYYY-MM-DD HH:MM
		환자인계시간	YYYY-MM-DD HH:MM

이송처치료 세부내역

구 분		①기본요금 (10km 이내)	②추가요금 (10km 초과 시)	③할증요금 (평일 야간 및 토요일 · 일요일·공휴일 이용 시 기본요금 및 추가요금에 각각 20% 가산)	④대기요금 (기관도착 30분 초과 시, 10분 단위 산정)
법 제44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 까지에 따른 의료기관 등	일반 구급차	[] 40,000원	[] ____km x 1,500원	[] 8,000원 [] ____km x 300원	[] 대기시간 ____분 [] 단위 ____ x 6,000원
	특수 구급차	[] 95,500원	[] ____km x 2,300원	[] 19,100원 [] ____km x 460원	[] 대기시간 ____분 [] 단위 ____ x 6,000원
법 제44조제1항 제5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일반 구급차	[] 26,600원	[] ____km x 1,000원	[] 5,320원 [] ____km x 200원	[] 대기시간 ____분 [] 단위 ____ x 6,000원
	특수 구급차	[] 63,600원	[] ____km x 1,500원	[] 12,720원 [] ____km x 300원	[] 대기시간 ____분 [] 단위 ____ x 6,000원

이송처치료 총액(①+②+③+④)

원

이용자명	(서명)	이용자 생년월일	
납부자명	(서명)	이용자와의 관계	
이송 중 처치내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이송기관명

직인

[할증요금 적용 기준]

* 평일 야간: 18:00 ~ 다음날 09:00

** 토요일·일요일, 공휴일: 전일(00:00~24:00)

[대기시간 적용 단위]

대기시간	적용 단위	대기시간	적용 단위
~30분	0	30분 1초~40분	1
40분 1초~50분	2	50분 1초~60분	3
60분 1초~70분	4	70분 1초~80분	5

* 이상 10분 단위로 적용 단위 1씩 증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구급차등 운행기록대장

(앞쪽)

구급차 등 구분		[] 일반 구급차 [] 특수 구급차 [] 항공기 [] 선박 [] 그 밖의 운송수단()						
공통	운용기관명							
	통보(신고)번호							
	제작 연월일							
구급차	차대번호							
	자동차 최초등록일					등록번호		
	운행연한	최초 운행연한						
		1차 연장 운행연한						
		2차 연장 운행연한						
		3차 연장 운행연한						
		4차 연장 운행연한						

운행 기록

[illegible]

297mm×210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작성방법

1. “통보(신고)번호”는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구급차등의 운용을 통보·신고하고 받은 부착용 통보·신고확인증에 기재된 통보·신고번호를 적습니다.
2. “제작 연월일”은 구급차등의 제작 연월일로, 구급차의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제작 연월일을 적습니다.
3. “차대번호” 및 “자동차 최초등록일”은 구급차의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차대번호와 최초등록일을 적습니다.
4. “등록번호”는 구급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에 기재된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5. “최초 운행연한”은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을 적습니다.
6. “연장 운행연한”은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차령 연장신청이 수리된 경우에 연장된 운행연한을 적습니다.
7. “운행기록”란은 구급차등의 모든 운행에 대해 작성해야 합니다.
8. “운행연번”은 출발 시의 연·월·일 여섯자리 숫자(YYMMDD) 뒤에 바(-)와 운행한 순서대로 부여한 숫자를 YYMMDD-0 형식으로 적습니다. 이 경우 운행 목적이 같은 운행기록이 여러 건 있는 경우에는 운행일과 상관없이 최초의 운행 출발 시에 부여한 운행연번을 적습니다.
9. “운행 목적”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급차등의 사용 용도인 1) 응급환자의 이송, 2)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 진단용 검사 대상물 및 진료용 장비 등의 운반, 3) 응급의료를 위한 응급의료종사자의 운송, 4) 사고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람을 의료기관 등에 이송, 5)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행하는 보건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업무, 6) 구급차등의 이용이 불가피한 척추장애 환자 또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이송, 7) 다수인이 모이는 행사 등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대기, 8) 자동차 관련 법령에 따라 구급차 운행 정비(자동차 정기검사, 주유, 산소통 충전 등)하기 위한 불가피한 운행의 경우 중에서 해당하는 사항의 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운행연번이 동일한 운행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 작성한 운행기록에만 운행 목적을 적고 다른 운행기록에는 적지 않습니다.
10. “출발 시간”과 “도착 시간”은 구급차등이 출발지에서 출발한 시간 및 도착지에 도착하여 운행을 종료한 시간으로, 24시간제로 적습니다.
11. “출발지 명칭”과 “도착지 명칭”은 출발지와 도착지의 지번이나 도로명 주소를 적습니다. 다만, 지번이나 도로명 주소의 확인이 어렵거나 구체적인 장소명으로 위치가 특정될 수 있다면 의료기관 명, 주요 건물이름 또는 지형지물 등 구체적인 장소명을 적을 수 있습니다.
12. “운행 거리”는 운행목적에 따라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구급차 등이 이동한 거리로, 도착 후의 누적 주행 거리에서 직전 운행기록의 누적 주행 거리를 제외한 거리입니다.
13. “누적 주행 거리”는 구급차 계기판의 총 주행 거리를 적는 것으로, 직전 운행기록의 누적 주행 거리에 새로운 운행기록의 운행 거리를 더한 것이 새로운 누적 주행 거리가 되며, 최초로 운행기록을 작성하는 경우 외에는 누적 주행 거리 기록에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14. “출동 및 처치 기록지 번호”는 출동 및 처치 기록지를 작성하는 경우에 전산으로 자동 생성되는 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운행연번이 동일한 운행기록이 여러 건 있는 경우에는 처음 작성한 운행 기록에만 출동 및 처치 기록지 번호를 적고 다른 운행기록에는 적지 않습니다.
15. “탑승인력”란은 운행연번이 동일한 운행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 작성한 운행기록에만 탑승인력을 적고 다른 운행기록에는 적지 않습니다.
16. “동승자 성명” 및 “면허번호·자격번호”는 동승자(응급의료종사자·의사·간호사)의 성명과 면허번호·자격번호를 적으며, 동승자가 없는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업 소 명			전 화 번 호		
소 재 지(주사무소)					
구급차 및 영업구역(시·군·구 단위)			별 첨		
(지 도) 의 사	성 명		주민등록번호		
	의사면허번호		전 화 번 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및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 허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 공통서류 가. 사업계획서 1부 나. 자본금과 구급차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다. 차고를 설치할 수 있는 토지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라. 영업시설의 개요 및 평면도 1부 마. 인력 채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기존법인의 경우 가. 정관 1부 나. 임원의 명부 1부 다. 허가신청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가.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것) 1부 나.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명부 1부 다.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주 또는 사업모집 계획서 1부	수수료 20,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건축물대장(일반/집합)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기존법인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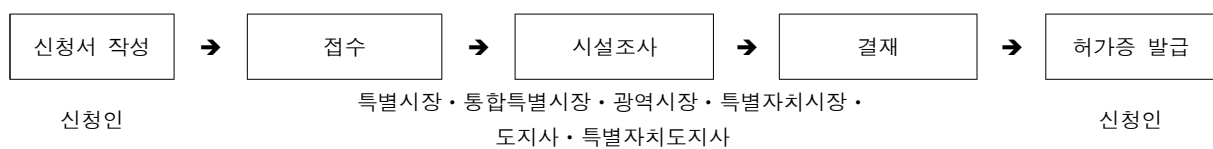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구분		승계 전		승계 후	
영업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영업소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허가번호			영업의 종류		
승계발생사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구비서류	1. 이송업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2. 영업 양도·양수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양도계약서 사본 1부 나.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제시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법인인 이송업자의 합병의 경우: 합병계약서 사본 1부 4.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경락확인서 등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이송업자의 합병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의 경우에는 변경된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변경 통보 또는
신고해야 하고, 변경 통보 또는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
장은 지체 없이 변경 전의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1.·2. (생략)

⑥ ~ ⑩ (생략)

제40조(출동 및 처치기록의 내용
및 방법) ① (생략)

②응급구조사등은 제1항에 따
라 출동 사항, 응급환자의 중증
도 분류 결과와 응급처치의 내
용에 관한 기록을 3부 작성하여
그 응급환자를 인수한 의사의
서명을 얻은 뒤 1부는 보관하
고, 1부는 해당 응급환자의 진
료의사에게 제출하며, 1부는 이
송처치료징수용으로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발급한다.

③ (생략)

④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법 제4
9조제3항에 따라 출동 사항, 응
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결과와
응급처치의 내용에 관한 기록

-----.

1.·2. (현행과 같음)

⑥ ~ ⑩ (현행과 같음)

제40조(출동 및 처치기록의 내용
및 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 인수한 응급의료
종사자의 서명을 받아 -----

-----.

③ (현행과 같음)

④ -----

----- 기록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응급
의료지원센터로 다음달 10일까
지 매월 제출해야 한다. <단서
신설>

⑤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구급차등 운
행기록대장을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해야 한다. <후단 신설>

<신 설>

제41조(이송업의 허가절차) ①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응급환자
이송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응급환자이
송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응급의
료지원센터에 -----
----- . 다만,
특별히 보안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전자문
서로 작성·제출하는 것이 곤란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⑤ -----

----- . 이 경우 조작 또
는 위조·변조한 것으로 운행기
록대장을 보존해서는 안 된다.

⑥ 제5항의 구급차등 운행기록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건복지
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
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보존해야 한다.

제41조(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절
차 등) ①-----

별지 제17호서식의 응급환자이
송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생략)
2.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내역을 기재한 서류 1부
- 3.·4. (생략)
5. 삭제
6. 기존 법인에 있어서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정관

나.·다. (생략)

7. (생략)

<신설>

② ~ ⑦ (생략)

<신설>

의 서류-----

-----.

1. (현행과 같음)
2. 자본금과 구급차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3.·4. (현행과 같음)

6. -----

가. 정관 1부

나.·다. (현행과 같음)

7. (현행과 같음)

8. 인력 채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 ⑦ (현행과 같음)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9조의2에 따라 법 제51조제7항에 따른 응급환자이송업자의 시설 등의 기준 준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응급환자이송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응급환자이송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4조(영업의 승계 신고) ①법 제54조에 따라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생략)

2. 영업의 양도·양수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생략)

나.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1부

제44조(영업의 승계 신고) ①-----

----- 별지 제23호서

식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다음 각 호의

서류-----

-----.

1. (현행과 같음)

2. -----

가. (현행과 같음)

나. -----

---- 1부(양도인과 양수인

이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

는 경우로서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

인 및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제시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3. · 4. (생략)	3. · 4.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